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2년 7월 13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소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조경구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 07. 13.

발의의원 : 전경원, 김태우,
류종우, 박소영,
박우근, 이영애,
이태순, 조경구,
하중환, 허시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대구시를 포함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브랜드 슬로건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변경 시에는 예산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에 조례의 브랜드 슬로건 부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 슬로건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규제를 완화 시키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기간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브랜드 슬로건 정의, 브랜드 슬로건 관리, 별지 서식 및 별표 삭제

(안 제2조제2호, 제3장 제6조에서 제10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별표 2)

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내·외적”을 “대외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 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을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 브랜드기본계획”을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으로, “2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민·관”을 “민관”으로 한다.

제3장(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로, “도시브랜드위원회 (이하”를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민·관”을 “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자”를 “사람”으로,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2호”를 “제2항제2호”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번만”을 “차레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브랜드담당관”을 “도시브랜드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 또는 자문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해당 분과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로,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의 <u>대내·외적인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대외적</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p> <p>2. “브랜드 슬로건”이란 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Colorful DAEGU”를 말하며,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 의미는 별표 1과 같다.</p>	<p>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p>
<p>제4조(도시브랜드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2년</u>마다 수</p>	<p>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 ----- <u>도시</u> <u>브랜드 기본계획</u>----- ----- <u>4년</u>-----</p>

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 5.·6. (생략)

제3장 브랜드슬로건 관리

제6조(브랜드 슬로건 관리 및 운

용) ① 시장은 브랜드 슬로건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브랜드슬로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브랜드슬로건의 관리운용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사용승인 신청 등) ① 브랜

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민
관 ----

5.·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다.

제8조(사용범위) ① 브랜드 슬로건

은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
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
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
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
우

2. 시의 품격이나 브랜드 슬로건
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지
역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
얼에 제시된 기본디자인 및 응용
디자인의 작도법, 전체적인 구
도, 전용색상 등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브
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을 부
득이 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삭 제>

<삭 제>

그 이미지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브랜드 슬로건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3. 제9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제11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 6.·7. (생략)
8.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

<삭 제>

제11조(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외 ----- 민관 -----
- 6.·7. (현행과 같음)
8. -----
----- 회의에 부치는

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도시디자인, 경영, 문화·관광, 환경, 행정서비스 등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사람 ----- 임명하거나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3. -----

-----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
위촉직 위원----- 차례만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
----- 인정하는 -----
----- 개의(開議)-----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
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홍보브랜드담당관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
임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하
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
--- 7일 전-----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도
시브랜드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

제15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
----- 호선(互選)한다.

③ -----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고,
해당 분과위원장-----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제16조(합동회의) ① (생략)

②합동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
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

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
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

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

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사
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본다.

제16조(합동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 사람이 --.

제1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

----- 의견 제
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
-----.

제18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

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9조(재정지원) -----

----- 국내외 -----

----- 범위-----
--.

<삭 제>

등 관계 법규에 따른 필요한 조치
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
--.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